

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9. 8.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 및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(안제6조)
 -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
 - 다만, 농·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(안 제6조)
 - 건조,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(25-40%미만)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.
-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완화(안 제10조)
 -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

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완화

○ 수거·운반·보관기준 설정(안 제12조)

-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·운반토록 함.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세부 방안들과 현 조례에서의 일부 과도한 규제를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함.